별지 2 위·수탁계약 해지 확인서

위·수탁계약 해지 확인서(권장)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________와 위 · 수탁차주________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위 · 수탁계약을 ____년 ___월 ___일 해지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.

제1조(확인서의 효력) 운송사업자가 위 · 수탁차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를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· 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동 확인서는 무효로 하며, 실제 차량의 소유자인 "위 · 수탁차주"을 가장하여 작성한 확인서임이 밝혀질 경우 운송사업자와 "위 · 수탁차주"를 가장한 자는 민 ·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.

제2조(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) 운송사업자와 위 · 수탁차주가 위 · 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을 하고, 이를 위 · 수탁차주에게 통지한다.

제3조(현물출자자 기재말소) 위 · 수탁차주는 위 · 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,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폐차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종전의 현물출자자를 해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동시이행) ① 운송사업자는 위 · 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폐차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공하고, 위 · 수탁차주는 대폐차를 위한 위 · 수탁차주 동의서를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고, 운송사업자는 관할 협회에 대폐차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사항이 이행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채무(미납금 등)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인감증명서 첨부) 운송사업자와 위 · 수탁차주가 위 · 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위 · 수탁차주는 이에 대한 의사의 진의를 표시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법인인감증명서(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)와 위 · 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를 확인서에 첨부한다.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교부된 것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위 · 수탁계약해지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면서 본 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(또는 기명)날인 후 "운송사업자"과 "위 · 수탁차주"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운송사업자 (성명 또는 상호)	㊞	법인등록번호		사 무 소	
				전화번호	
위 · 수탁차주 (성명)	㊞	생년월일		차 수 명	
				H.P	
				차량번호	
				주 소	

채윤주 / 신풍동 / 2018-06-25 09:37:20